

공동행위(카르텔) 관련 세미나 실시

본 연합회(회장 김 용, www.kfcf.or.kr)는 지난 8월 27일(금) 연세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 임원 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행위(카르텔)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카르텔의 근원적 방지 방안과 카르텔 사건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 면책제도(Leniency Program)의 운용방향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허 선 경쟁국장의 세부적인 설명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허 선 경쟁국장은 카르텔의 폐해는 독점의 폐해보다도 심각하다며 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수 있고 시장 진입장벽이 낮다면 잠재적 진입자를 의식하여 가격을 높게 형성하기가 어려운 반면, 카르텔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카르텔의 참여기업은 바로 독점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국민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공정위는 카르텔을 시장경제의 제1의 공적(公敵)으로 인식하고 카르텔 근절을 제1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카르텔은 중범죄로 취급되어 카르텔 조사공무원은 압수수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카르텔 참가기업은 ①1천만\$, ②사업자 이득의 2배, ③피해자 손실의 2배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5만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6%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관련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과징금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카르텔의 속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카르텔을 자진신고하는 사업자에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재를 감면하는 관용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 선 경쟁국장은 우리나라의 카르텔 과징금 최고액수는 관련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으로, EU 등 유럽국가는 거래액의 10% 전후, 미국은 20%까지를 담합이득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카르텔의 발생확률

이 높고 적발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강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면책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사작수 이후에도 완전면책이 부여될 수 있도록 면책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면책부여의 자동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면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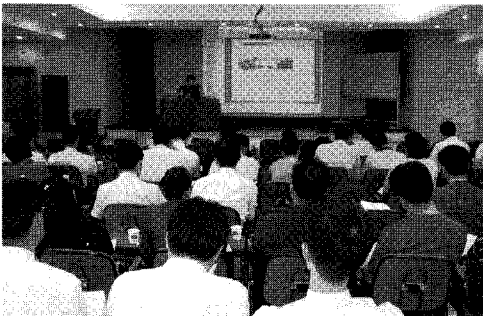
질의 공동행위의 법률상 추정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법은?

응답 법률상의 추정으로서 Plus factor(합의의 정황증거)가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똑같이 올랐다”와 같은 외형의 일치와 있고, 그것을 모의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있을때 카르텔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런 정황증거 없이 외형의 일치만 있었다고 해서 추정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정위가 주장하는 Plus factor(합의의 정황증거)에 대해서 기업은 카르텔이 아니었다라는 정당한 해명을 하면 된다.

질의 카르텔보다 불공정거래행위 위반건수가 더 많은데 카르텔 규제에 공정위가 더 치중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균형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응답 미국의 경우 700명중에 400명이 카르텔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440명 가운데 12명이 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연합회는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통분야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을 위해 9월 2일(목) 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마포구 공덕동 소재)에서 30개 대형유통업체 67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유통업체 임직원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으로 실시

한 이번 교육은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도와 대규모소매점 및 경품류제공 등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설명과 사례중심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박정원 과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지정고시와 특정사업분야 또는 지정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지정고시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였으나 현행 고시는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해서만 세부기준을 지정고시함으로써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과장은 대규모소매점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백화점, 쇼핑센터 또는 대형점의 등록을 하고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자와 TV홈쇼핑업자를 지칭한다고 말하며,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반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매출액이 10억원(제조업체는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경품규제의 대상이며, 경품이란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당해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가격할인, 덤, 리베이트, 쿠폰, A/S 등은 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